#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990

발의연월일: 2024. 11. 28.

발 의 자:정성호·최기상·김정호

박해철 • 박희승 • 윤후덕

이연희 · 안규백 · 문진석

조계원 · 김영환 · 이재강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광역철도 건설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70:30 또는 50:50)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광역철도 운영비 분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현재 광역철도 운영비는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훈령, 2014. 5. 17. 제정)이 마련된 이후에 사업추진이 확정된 광역철도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음.

그런데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정 이전에 건설된 다수의 광역철도의 경우 정부가 운영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는 반면, 최근에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광역철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여 비용 분담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철도 운영비를 분담할 수 있는 법

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도시권 광역철도 건설을 활성화하고 지방 자치단체의 운영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1항 및 제12 항 신설).

#### 법률 제 호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철도 운영에 필요한 비용("운영비"라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담하는 운영비 지원의 기준, 대상, 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1항에 따른 운영비를 분담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비"는 "운영비"로 본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	제10조(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
정 지원 등) ① ~ ⑩ (생 략)	정 지원 등) ① ∼ ⑩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
	역철도 운영에 필요한 비용
	("운영비"라 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을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담하는 운영비 지원
	의 기준, 대상, 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u> &lt;신 설&gt;</u>	① 지방자치단체가 제11항에
	따른 운영비를 분담하는 경우
	에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
	다. 이 경우 "사업비"는 "운영
	<u>비"로 본다.</u>